

'25.7.28(월), 보이스피싱 근절을
위한 현장간담회 안건

「보이스피싱 시플랫폼」(가칭) 구축방안

2025. 7.

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「보이스피싱 시플랫폼」(가칭) 구축방안 ...	4
III. 기대효과	6
IV. 향후계획	7

I. 보이스피싱 현황

□ IT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첨단화·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

*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: ('23) 1.9만건 → ('24) 2.1만건 (10%↑)
피해금액 : ('23) 4,472억원 → ('24) 8,545억원 (91%↑)
(1인당 피해액) : ('23) 약 2,400만원 → ('24) 약 4,100만원 (70%↑)

○ 고도화된 시나리오, AI·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등 범죄수법이 빠르게 진화

⇒ 다양한 범죄수법에 대한 유연하고 빠른 대응 전략 필요

○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 등을 바탕으로 특정 소비자를 목표로 하여 큰 규모의 자금을 편취하고 신속히 도주

⇒ 신속한 초동 대응(지급정지 등)을 통한 피해예방이 긴급

○ 가상계좌, 간편송금 등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여러 계좌로 이체를 반복하여 자금추적을 회피

⇒ 각 업권 간 체계적·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대응 긴급

< 전문가 간담회 논의 주요 내용 >

- “범죄자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한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피해금액을 이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주변에서 위험을 경고하고 알려줄 수있는 **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**”(00은행)
- “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전하는데, 대응체계는 발전된 AI기술력을 활용하지 못하여 아쉬움. **각 금융사의 탐지모형을 고도화할 정보·기술 교류가 꼭 필요하다**고 봄”(00카드)
- “사회초년생, 취준생 등 **자금이 부족한 청년**을 대상으로 **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매체**(SNS,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)를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”(00은행)

-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비해 이를 탐지하는 금융권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(FDS)은 정보량 및 정보범위 등에 한계가 존재
 -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의심정보는 개별 금융사가 자체 보유한 정보가 대부분이고 타금융사 등과 정보교류 등은 매우 제한적
 - 보이스피싱 범죄자 또는 피해자 정보가 탐지되어도 단일한 공유 채널이 없어 다른 금융회사에 즉시 공유가 곤란
 - 금융회사별로 AI 기술 개발의 정도가 다르고, AI 분석을 위한 피해사례도 많지 않아 최신 수법에 대응하기 어려움

< 전문가 간담회 논의 주요 내용 >

- "오픈채팅방, 메신저 이체 등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, 기존에 의심계좌 탐지에 활용했던 계좌이체 내역, 거래패턴 등으로만 위험도를 판단하기 어려움"(00은행)
- "현재 은행간 의심정보 공유 시, 전화, 팩스 등을 통해 사람이 직접 건넌히 처리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움"(00은행)
- "상대적으로 영세한 금융회사의 경우, AI 기술을 자사의 FDS 시스템에 적용할 자원(인프라, 비용 등)이 부족하여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대응이 어려움"(00카드)

- 이에, 금융위는 20여 차례 이상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선제적으로 피해를 탐지·예방할 수 있는 「보이스피싱 AI 플랫폼(가칭)」구축 추진

< 현장 전문가 간담회 주요 내역 >

-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 관련 업권·전문가 간담회 (25.6.13)
 - * 금감원, 금보원, 주요 은행 및 카드사, 민간전문가(교수, 변호사 등)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점검
-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의심정보 공유 및 활용 방안 (25.6.23)
 - * 은행연합회, 주요 은행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의심 내역을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 논의
-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현업 의견 청취 (25.6.24)
 - * 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개선 등 논의
- 보이스피싱 현황 및 대응 방향 (25.7.4)
 - * 금감원, 금보원, 주요 은행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전예방 과제 논의
-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정보공유 항목 논의 (25.7.11)
 - *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에 집중할 정보에 대한 세부 논의(금보원, 주요 은행)

〈 추진 방향 〉

목표(Goal)

선제적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
「보이스피싱 AI 플랫폼」(가칭) 구축 추진



집중

전 분야에 걸친 보이스피싱 사기정보 집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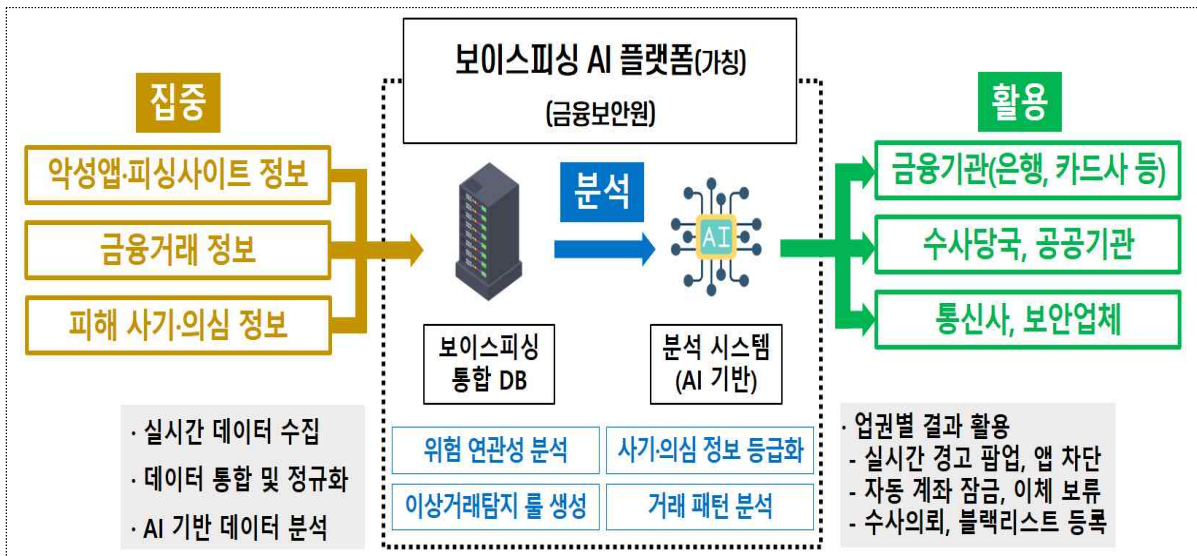
공유

참여기관별 필요정보의 신속 공유

활용

AI 활용을 통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연계·고도화

〈 보이스피싱 AI 플랫폼(가칭) 체계도 〉



플랫폼에 집중된 정보를 AI 기반으로 분석하고 결과를
공유함으로써 신속·정확한 보이스피싱 대응

II. 「보이스피싱 AI 플랫폼(가칭)」 구축방안

◇ 금융·통신·수사 정보를 집중·공유하여 선제적·체계적 대응

- 피해의심 단계부터 **기관간 신속한 정보교류**로 즉각적 초동대응
-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죄사례 추적·공유로 **대응전략 고도화**
- AI기술 활용하여 범죄 의심계좌 **사전탐지·예방효과 극대화**

1 개요

□ 금융·통신·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집중하고 AI 기술로 패턴 분석 등을 통해 피해가능성을 선제 파악·대응

○ (운영주체) 금융보안원 ※ 「이상거래정보 공유시스템(FISS)」을 고도화

○ (참여기관) **소금융권·전자금융업자(134개*) <FISS 기참여> + 통신3사(SKT, KT, LGU+) + 수사기관 <신규참여 필요>**

* 은행 19, 보험 35, 금투 33, 저축 14, 카드 8, 전금 8, 기타 17

※ 참여범위는 순차 확대(예 :제1금융권 → 제2금융권 → 통신사)

2 정보집중

□ 금융사·통신사·수사기관 등이 자체 FDS 등으로 파악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「보이스피싱 AI 플랫폼(이하 AI플랫폼)」에 집중 (☞ 「AI 플랫폼」 운영기준 제정,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)

※ 통신사·수사기관 정보범위·방식 등은 관계기관·업계 의견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

< 정보집중 항목 및 활용안(예시) >

구분	항목	비고
금융사	· 피해발생 계좌정보(다계좌 이체 등) · 자체 분석 정보(FDS 위험도 정보 등)	· 他금융회사에 공유하여 즉시 지급정지 · 「AI 플랫폼」고도화에 활용
통신사	· 기기정보, 악성앱 설치 여부 · 자체 분석 정보(위험도 등)	· AI 분석시 위험도 산정기준에 반영 ·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임시조치 등 활용
수사기관	· 악성앱에 노출된 피해자 정보 · 해외계좌 정보(국가, 거래일시 등)	· 금융회사 거래시 본인확인조치 강화 · AI 분석시 위험요인 등에 반영

3 정보공유

- 「AI 플랫폼」에 집중된 정보는 '긴급공유 필요 정보', 'AI 분석 정보'로 구분하여 공유(☞ 「AI 플랫폼」 운영기준 제정)
 - (긴급공유 필요정보) 피해자 신속구제를 위해 가공없이 당장 공유가 필요한 정보*는 同플랫폼을 통해 공유가 필요한 참가기관에 즉시 전달
 - * (예) 보이스피싱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이 완료된 계좌정보 등
 - (AI분석 정보) 금융회사가 자체 FDS를 통해 파악한 의심정보들을 AI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전 참가기관에 신속히 공유

4 정보활용

- 참여기관은 「AI 플랫폼」을 통해 공유된 정보를 활용해 보이스 피싱 사전차단·피해자 구제 등 다양한 활동 수행 가능
(☞ 「AI 플랫폼」 운영기준 제정, 각 금융사·통신사 자체 내부규정 개정)

[긴급공유 필요정보]

- ① 해당 계좌와 거래관계 있는 자행 이용자에 경고,
- ② 이용자가 입출금 시도시 은행원이 영상통화 등 문진 강화,
- ③ 이체된 자금에 대한 지급정지 및 신속한 환수 등

[AI분석 정보]

- (금융회사) ① 운영중인 이상거래탐지 모델 고도화,
② 취약 위험군(예 : 60대 이상, 소상공인) 사전 모니터링,
③ 본인확인·보이스피싱 위험 안내 강화 등
- (통신사) ① 위험도가 높은 회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(신규회선 제한 등)
② 실제 금전피해가 발생한 사례의 위험도 산정기준 강화
- (수사기관) ① 위험도를 분석하여 동일명의인에 대한 수사에 참고
② 위협지표(계좌번호 등)를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반영

III. 기대효과

① 첨단화·다양하게 변화하는 최신 수법에 효과적 대응

- 통신사·금융사·수사정보 등 다양한 경로로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종 범죄수법 패턴 등 용이하게 파악
- 각 금융사에서 파악하던 보이스피싱 사례를 집중하고, AI 기술의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보안원이 사례를 분석하여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 탐지 가능

■ 사례

(이전) 00신협은 제한된 보이스피싱 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기술을 통해 사전 탐지

☞ (이후) 전 금융권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융보안원의 AI 패턴 분석 기반으로 사전 탐지

② 피해의심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

- 보이스피싱 범죄계좌로 확인된 경우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쏠금융사와 통신사에 공유할 수 있어 초기에 피해 예방이 가능
- 타은행에서 출금된 내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지급정지·환급이 가능

■ 사례

(이전) 범죄계좌를 탐지했음에도 타 금융사 확인 등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대응 속도 저하

☞ (이후) 「AI 플랫폼」 기반의 자동화된 의심정보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신속정확한 대응 가능

③ 기관간 협업·공조를 위한 소통 원활화

- 현재는 기관간 피해의심자에 대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메일,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
- 「AI 플랫폼」을 통해 전산화·표준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소통 가능

■ 사례

(이전) 타은행의 범죄 활용계좌 지급정지 요청시 일일이 전화 등 사용

☞ (이후) 「AI 플랫폼」의 전산화된 방식으로 손쉽게 지급정지 요청

IV. 향후 추진계획

□ 「보이스피싱 AI 플랫폼」 구축

○ 금융권 정보공유·집중(3분기)

※ ① 정보집중 대상 항목 선정 및 표준화 방법, ② 보이스피싱 리스크 지표 개발 등

* 통신사·수사기관 등은 법령 개정 등 상세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유·집중 추진

○ 「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운영기준」 마련(3분기)

※ ① 정보공유 항목 선정, ② 개인정보 오남용 통제 방안 마련 등

○ 「보이스피싱 AI 플랫폼」 출범(4분기)

□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

○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 개정안 마련(3분기)

※ 보이스피싱 의심정보공유를 위한 특례 조항 마련 등

○ 연내 국회 통과 추진

□ 과제 추가 발굴

○ 「전문가 간담회」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 청취

○ 「현장 공모전*」 등 통해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

※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의미 등을 담을 수 있게 「보이스피싱 AI 플랫폼」 명칭도 공모